

의안번호	제429호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

충청북도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
폐지조례안

발의자	안치영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3년 10월 4일

충청북도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

(안치영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29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3년 10월 4일

발의자 : 안치영, 이상정, 김정일,
박봉순, 안지윤, 조성태,
박병천

1. 제안이유

- 「충청북도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」는 충청북도 또는 충청북도지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임되는 증인, 참고인, 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
-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에 대한 실비는 「행정소송법」 제8조, 「민사소송법」 제116조, 「민사소송규칙」 제19조, 「민사소송비용규칙」 제3조, 제3조의2에 지급 근거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「충청북도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」 폐지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붙임
- 조례안예고 : 예고대상
- 협의 : 충청북도 법무혁신담당관
- 비용추계 : 해당없음(제외사유서 붙임)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

충청북도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췌

□ 행정소송법

제8조(법적용예) ①행정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②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02. 1. 26.>

□ 민사소송법

제116조(비용의 예납) ①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다.

②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소송행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□ 민사소송규칙

제19조(소송비용의 예납의무자) ①법 제1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소송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는 당사자는 그 소송행위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로 하되,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. <개정 2020. 6. 26.>

1. 송달료는 원고(상소심에서는 상소인을 말한다. 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같다)
2. 변론의 속기 또는 녹음(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속기, 녹음 및 제37조에 따라 녹음에 준하여 이루어지는 녹화를 제외한다. 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같다)에 드는 비용은 신청인. 다만, 직권에 의한 속

기 또는 녹음의 경우에 그 속기 또는 녹음으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

3. 증거조사를 위한 증인·감정인·통역인(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인은 제외한다. 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같다) 등에 대한 여비·일당·숙박료 및 감정인·통역인 등에 대한 보수와 법원 외에서의 증거조사를 위한 법관, 그 밖의 법원공무원의 여비·숙박료는 그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. 다만,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의 경우에 그 증거조사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

4. 상소법원에 소송기록을 보내는 비용은 상소인

②제1항제2호의 속기 또는 녹음, 제1항제3호의 증거조사를 양쪽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와 제1항제4호의 상소인이 양쪽 당사자인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균등하게 나누어 미리 내게 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정에 따라 미리 낼 금액의 비율을 다르게 할 수 있다.

□ 민사소송비용규칙

제3조(증인등의 일당) ①당사자, 증인, 감정인, 통역인 또는 번역인(이하 “증인등”이라 한다)의 일당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출석 또는 조사 및 이를 위한 여행에 필요한 일수에 따라 지급한다.

②증인등의 일당은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03. 9. 13.]

제3조의2(증인등의 국내여비·숙박료) ①증인등의 여비는 운임과 식비로 한다.

②증인등의 국내운임은 철도운임·선박운임·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의 4종으로 구분하되,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.

③증인등의 식비 또는 숙박료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

여 지급한다.

④증인등의 국내운임, 식비 또는 숙박료는 「법원공무원여비규칙」 제10조 내지 제13조 및 제16조제1항의 별표 2 “국내여비지급표”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소정액 이내로 한다. <개정 2006. 6. 14., 2009. 1. 9.>

[본조신설 2003. 9. 13.]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4항제1호

○ 사 유

- 본 조례안은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에 대한 실비는 「행정소송법」 제8조, 「민사소송법」 제116조, 「민사소송규칙」 제19조, 「민사소송비용규칙」 제3조, 제3조의2에 지급 근거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조례 폐지 시 예상되는 발생 비용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고 사유서를 제출함.

○ 작성자

기획관리실 법무혁신담당관 허 정